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의 제목을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